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72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황정희

피고,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순

2. C

변론 종결 2019. 8. 23

판결선 고 2019. 9. 2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52233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 2. 4. 접수 제 7559 호로 마친, 같은 법원 등기국2017. 3. 2. 접수 제38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 .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13, 75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3. 8. 3.'을 '2013. 4. 1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2004 . 2. 4.부터 D이 사망한 2013. 4. 19.까지, 그리고 D의 사망이후 이 사건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회복을위한 시도나 D과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을 요구한 바가 없어 보인다.

특히 D이사망할 무렵원고 및 D의 누나인 F과 피고 B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는데, 만일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면 원고는 D이 사망할 무렵피고 B이상속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였음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마친 2017 . 3. 2. 까지 장기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D에게 증여된 재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을가 제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3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게 해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젠 저도 좀 살아야겠어요. 4년 동안 어머니 쓰시도록 해드렸잖아요” 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사건 오피스텔을 D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가 제 1, 3내지 5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였던 D이이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을 소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j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판사 이미선판사 이준민

별지